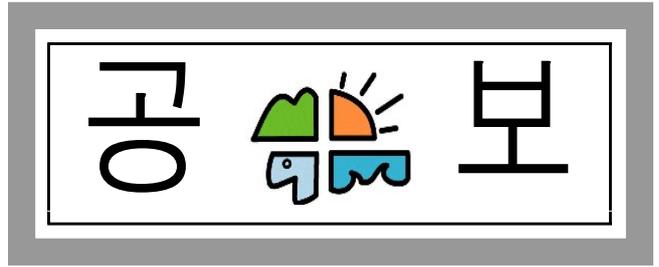
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259호 2020년 4월 28일(화)

## 훈 령

- 속초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..... 2

속초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발령한다.

2020년 4월 28일

속초시장

직인

속초시 훈령 제733호

### 속초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

속초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속초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속초시 도로관리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심의회 설치 및 관할)** ①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2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도로를 관할한다.

1.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

2.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

**제4조(심의회)의 구성**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속초시청: 건설도시과장, 교통과장, 환경위생과장, 도시계획담당, 도로시설담당, 도로관리담당, 지역개발담당, 안전예방담당, 급수담당, 누수방지담당, 하수시설담당

2. 속초경찰서 교통관리계장

3. 속초소방서 방호사법담당

4. (주) KT속초지점 CM팀장

5. 참빛도시가스(주) 사업기술팀장

6. 그 밖에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지역 주민

**제5조(위원의 임명 및 위촉)** 시장은 제5조에 의거 위원을 임명 할 때에는 그 담당 직위 또는 직책 명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**제6조(심의회)의 정기회** 심의회는 연 2회(반기별) 소집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**제7조(심의·조정결과의 통보)**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·조정한 결과를 시장(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함)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·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간사)** ① 위원장은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임명한다.

② 간사는 도로굴착업무담당자이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담당자로 한다.

③ 간사는 심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

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현지조사)**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0조(수당)**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